

내용증명

발신자: 명지대학교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 고문변호사 **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층. 법률사무소 ***

수신자(1): 명지학원이사장 **훈, 서울시 서대문구 명**길 **

수신자(2): 명지대학교총장 **수, 서울시 서대문구 거**로 **

수신자(3): (자칭)명지대학교교회운영위원회 *** 목사, 서울시 서대문구 가** ***

제목: 명지대학교교회 당회 결의사항 준수 요구의 건

귀 명지학원(이하 '학원'), 명지대학교(이하 '대학교') 및 (자칭)명지대학교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 변호사는 명지대학교교회(이하 '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이하 '바세위')의 고문변호사로서 바세위를 대리하여 다음 내용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바세위는 2025.11.20. 대학교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구*홍 담임목사에 대하여 직무정지 가처분(서울서부지법 2025카합50242)을 신청하여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담임목사 임명 과정에서 교회규정 제8조 제1항 '당회의 제청'이 누락된 중대한 절차 상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교회와 학원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본안(담임목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대학교 및 운영위는 기존 명지대학교교회규정(이하 '교회규정')을 우회하여 선교위원회를 통한 임시당회장 선임을 시도하며, 당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담임목사직무대행을 자처하는 운영위 서기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예/결산 의결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교회와 학원이 1973년 상호 합의하여 제정한 후 53년간 상호 존중하며 유지해 온 교회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들은 교회규정에서 정한 당회 직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독립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자치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세위는 2026.03.24. 임시당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결의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귀 학원과 대학교, 그리고 운영위에게 통지합니다. 사안을 엄중히 인지하시고 교회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사항 1> 교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교회규정 제33조에 의거하여 당회의 허락 없이 조직된 불법 단체이며, 운영위를 규정하고 있는 명지대학교교회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은 교회규정 제33조에서 정한 불법 정관 및 회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회는 운영위 조직과 운영규칙 제정이 원천무효하며 2026.03.24.부터 조직은 해산되었음을 결의/공표한다.

<결의사항 2> 2026.03.29. (자칭)담임목사직무대행 명의로 소집되고, 운영규칙을 근거하여 개최·진행되는 공동의회는 교회규정 제3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당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불법 하며 원천 무효하다. 이에 관여된 개인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결의사항 3> 해산된 조직인 운영위 소속이었던 운영위원들은 교회규정을 심대히 위반하였으므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배, 인사 및 재정과 관련된 회의나 의결에 참여하는 모든 행동을 엄격히 금한다(단, 교회규정에 정한 예배와 공동의회 참석은 자유에 한함). 이는 교회규정 제27조, 제33조에 따른 당회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결의사항 4> 당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2026.03.29.에 공동의회가 강행될 경우 이는 교회 규정 위반 여부 및 당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의 진행과정은 기록 및 보관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향후 민·형사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끝-

[참고사항: 결의근거가 되는 관련 교회규정들]

교회규정 제27조(당회의 직무)

2항. 당회에서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항. 당회에서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교회규정 제31조(공동의회)

2항.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2주일 동안 교회 현관 앞 게시판에 공고한다.

교회규정 제33조(기관과 지회 단체) 교회 내 부서 및 지회와 단체를 설립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한다

1항. 부서 및 지회와 단체를 설립코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항. 부서 및 지회와 단체의 정관 및 회칙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부서 및 지회와 단체는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6년 3월 26일